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WORLD OKTA SYDNEY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는"World-OKTA 시드니 지회"라 칭한다.

제2조. 소 재 지
본회의 사무소는 시드니 내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사업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여, 조국의 무역 증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차세대 무역인 양성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사업 및 무역정보 교환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3. 모국상품 구매 및 애용 운동

4. 각종 상품 전시회 및 세미나개최
5. 기타 무역진흥과 회원사 발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무역스쿨 및 산학협동을 통한 차세대 무역인 양성
7. 모국 제품의 수입 촉진 활동과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8. 회원간 친선 교류 및 복리 증진 사업
9. 현지정부 및 경제단체와 교류 증진
10. 현지정부 지역사회 봉사 활동
11. 한국문화 현지화 보급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 격
본회 회원은 시드니를 중심으로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본회의 취지와 정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재 호주동포로서 아래와 같은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규회원 가입 시는 본회 "회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ABN과 TAX FILE NO를 소지한 합법적 사업체 운영자
2. 월드옥타 시드니 무역스쿨을 수료한 차세대 경제인
3. 전문직 및 특수직 종사자

제6조. 구 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본 회의 회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자로 한다.
1. 정회원 : 현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CEO 로서 지회의 인준을 받은 자.

2. 준회원 : 차세대 무역스쿨을 수료한 자로서 지회 소속으로 본 회의 목적에 동참하는 자.
3. 명예회원 : 국적을 불문하고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찬동하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집행부가 인정한 자.
4.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제7조. 권리 및 의무
1.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회칙 및 그 밖의 제규정 준수 및 본회 활동에 적극참여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시한 내 납부

2.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회칙 및 그 밖의 제규정 준수 및 본회 활동에 적극참여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4.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총회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월드옥타에서 진행하는 사업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8조. 탈 퇴
1. 본회의 회원이 탈퇴를 원할 시에는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30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의 강제탈퇴가 결정된 경우,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회원 및 전회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윤리위원회, 회원심사위원회, 징계 및 자격심사

1. 윤리위원회

1-1. 목적: 윤리위원회는 회원 상호간 화합과 갈등의 중재를 목적으로 한다.

1-2. 구성: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 및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상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또는 회원간의 심각한 갈등, 타 지회 회원 또는 타 지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본 회의 명예나 위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임원회 의결 후 회장이 소집하며, 윤리위원회 구성은 명예회장 2인, 부회장 1인으로 한다. 명예회장 중 1인이 윤리위원장을 맡는다.

1-3. 임무: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30일 이내에 해당사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회장에게 징계 수위를 권고하여야 한다.

2. 회원심사위원회

2-1. 목적: 회원심사위원회는 협회 발전을 위해 공정한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2. 구성: 회원심사위원회는 임원회로 구성된다.

2-3. 임무: 회원 입회자격을 검토 및 심사하며, 신규회원심사 요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 5조. 자격 ' 을 기준으로 가입 가부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가부는 임원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2-4. 회원자격재심

2-4-1. 자격상실재심: 본회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후 월드옥타본부나 타지회를 통한 징계 및 문책 또는 본 회의 명예나 위상에 손상되는

이력이 확인될 경우 회원자격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회원자격 유지여부를 의결한다. 회원자격 상실로 의결이 된 경우 회장에게 윤리위원회 소집을 권고한다.
2-4-2. 자격회복재심: 본회의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후, 회원의 노력으로 상실요건이
해소된 경우, 회원자격 회복을 의결한다.
2-4-3. 처리시한: 자격상실재심 또는 자격회복재심의 요청이 있은 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3. 회비납부 미이행에 따른 정회원 자격 상실 및 회복
3-1. 본회의 정회원은 정기총회개최 후 사무국의 회비납입 안내 공지일 90일 이내 (60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30일을 추가 유예기간으로 함) 연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 미납회원은 정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 전 회원에게 통보한다.
3-2. 회비납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 상실 사유를 해소한 경우 자격회복재심을 통해 회원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제 3 장 임원회

제10조. 구 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까지 둘 수 있다.
3. 감사: 1명
4. 사무총장: 1명
5. 분과별 위원장: 사업특성과 필요에 따라 마련된 분과별 위원장

제11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익일부터 시작하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지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시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하며 재임여부는 제12조 1항에 의거 총회에서 의결한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회장이 이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선 임

협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회원으로, 본부나 지회를 통한 징계 및 문책, 명예나 위상에 손상되는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 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원심사위원장도 겸직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담당 분과위원회를 총괄 지도하며, 회장 유고 시 임시총회를 소집, 결의를 통해 부회장 중 1인이 전임회장의 잔여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 본회의 재산상황 및 재정, 사업 업무의 감사
- 집행부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 위 1,2 항의 감사결과를 회장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구하는 일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사무총장: 본회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해 회장을 보좌해 집행, 관장한다. 사무총장은 원활한 협회업무의 진행을 위해 사무국을 구성하고, 총무, 재무, 홍보 등 실무를 담당할 세부 실무국을 운영한다.
5. 분과위원장: 담당 부회장을 구심으로, 각 분과별 전문 사업을 실행, 관장하며, 각 분과위별로 운영내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전문업무를 실행한다. 분과위원회의 신설 및 폐지여부는 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4 장 실무진

제14조. 구성
1. 사무국: 업무특성과 필요에 따라 세부 실무국을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부서별 국장을 임명하고, 필요시 부국장을 둘 수 있다.
1-1. 국장: 1명
1-2. 부국장: 1명
2. 분과위원회: 사업특성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2-1. 부위원장: 1명
2-2. 간사: 1 명 이상
3. 차세대
3-1. 차세대 대표: 1명
3-2. 차세대 부대표: 1명

제15조. 임기 및 선임
1. 실무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실무진의 선임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재가를 득하여 선임한다.
3. 실무진의 임기기간 중 결원이 발생할 시, 해당 부서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재가를 득하여 선임한다.

제16조. 임무
1. 사무국 국장 및 부국장: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부서별 실무를 담당한다.
2. 분과 부위원장 및 간사: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분과별 사업 실무를 담당한다.
3. 차세대 대표 및 부대표: 차세대위원장을 구심으로, 차세대무역인 양성사업과 세대간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명예회장 및 본부상임이사

제17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임기를 만기한 전직회장 및 회장대행으로 임원회의 2/3이상 동의 후 회장이 추대한다.

제18조. 본부 상임이사: 정회원으로서 본회 국제 행사에 최근 2 년내에 2 번이상 참가한 자로 임원회의 과반수 동의 후 회장이 추천한다.

제 6 장 총 회

제19조. 기 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
4.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안건

제20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12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4.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 임원회는 각각 재적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위임출석도 인정하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결권은 없다.
2. 의결정족수는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임시총회 소집
회장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2. 임원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명으로서 회의목적을 명시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7 장 임원 회의

제23조. 소 집
1. 임원회의는 회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임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2.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정식 소집을 통한 회의는 회의록을 기록, 관리하며 개회와 산회를 명시한다.

제 8 장 재무 및 회계

제24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는 $100, 년 회비는 $200로 하고, 당해 연도 납부시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중 가입하는 신입회원일 경우에만 한하여 가입 당해년도 연회비는 가입 승인월부터 당해 12월까지 기간동안 월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2. 임원 분담금: 임기기간 중 1 회이며, 회비를 포함한다. 단, 겸직시 한 직책에 해당되는 분담금만 지불한다
회 장 $ 2,000
부회장 $ 500
감 사 $ 0

분과위원장 $ 0

3.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회계결산 본회의 수입 지출명세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정산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작성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당해 회장은 당회계연도 적자결산을 차기 회계연도에 넘길 수 없다.

제27조. 해산 및 청산 본회는 회원이 전무하거나 합병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하며 이 경우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잔여재산 청산을 의결한다.

부 칙 (선거규칙)

제28조. 선거권자
선거권자라 함은 본회의 정회원을 말한다.

제29조. 회장 피선거권 자
회장 피선거권 자는 본회에 4 년 이상 임원으로 봉사하고 국제대회 4 회 이상 참가한 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협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한시직으로 명예회장 중 1인이 임직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총괄한다.
투표함, 투표용지, 개표방법, 무효투표 등 모든 선거의 원칙과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한다.

제31조. 투표 거부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등록을 대행하거나, 회비를 대납 또는 부정선거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조. 선거 방법
1.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복수 입후보자 투표시, 반드시 의결 정족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만약 2차에서도 계속 1/3이상 득표하지 못할시 3차
투표에서 최다득점자로 선출한다.
3. 단일 입후보자 투표시, 선거를 통해 의결정족수의 1/2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만약 얻지 못하면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며 그 때도 신임을 얻지 못하면 후보자격을 상실한다. 이후 재
추천으로 위 각항에 따라 선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의결
정족수를 획득하는데 실패할 경우, 부회장 중 1인이 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33조. 선거 이의신청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후보자를 통한 이의 발생 시, 선거를 실시한
날로부터 3 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접수와 동시에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검토하여 판정해야
한다.

부 칙

제34조. “World-OKTA 시드니 지회”는 World-OKTA 본부의 정관을 따르며, 본부의 지시를 받고 지회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35조. 본회의 정관은 호주 NSW 주 법령에 준 한다.

제36조.
1 본회 정관의 개정의 경우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합병, 해산의 경우 재적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정관에 누락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8조. 본회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9조
전직 회장은 신임 지회장에게 업무를 성실하고 원활하게 인수인계하여 조직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정관 개정일지

A) 호주해외한인무역협회 대양주지회 1990년 10 월 27 일 정관 제정

B) 호주해외한인무역협회 1996 년 10 월 20 일 개정

C) 호주해외한인무역협회 2000 년 10 월 31 일 개정

D) 호주해외한인무역협회 2003 년 05 월 09 일 개정

E) World-OKTA 시드니지회 2005 년 03 월 17 일 개정

F) World-OKTA 시드니지회 2005 년 07 월 31 일 개정

G) World-OKTA 시드니지회 2011 년 01 월 24 일 개정

H) World-OKTA 시드니지회 2012 년 12 월 07 일 개정

I) World-OKTA 시드니지회 2017 년 03 월 08 일 개정

J) World-OKTA 시드니지회 2019 년 02 월 15 일 개정

K) World-OKTA 시드니지회 2024 년 03 월 30 일 개정

L) World-OKTA 시드니지회 2025 년 03 월 30 일 개정

World-Okta SYDNEY